

인지세 납부 안내(1)

인지세법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 및 매매계약 체결 시 인지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인지세 과세대상과 납부기한 ※ 2023년 1월 1일부터 인지세법 일부개정

과세대상	납부기한	기재금액	계약금 납부
부동산 분양계약서	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분양대금(총 공급금액)	매수인 보관용 계약서에 첨부
분양권 매매계약서	명의변경 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실제 거래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	

※ 2023년 1월 1일부터 인지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 계약체결일 납부에서 계약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로 변경되었지만, 원활한 계약진행을 위해 계약체결일 당일에 인지세를 납부해주시길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액

• 아파트 공급계약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인지세 납부대상으로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 의거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균등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구매 금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매도인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 5천원	7만 5천원	17만 5천원
매수인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 5천원	7만 5천원	17만 5천원

• 발코니 확장 및 추가옵션계약

발코니 확장 및 추가옵션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인지세 납부대상으로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 의거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각각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구매 금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매도인 부담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매수인 부담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와 발코니확장 계약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에 따른 인지세를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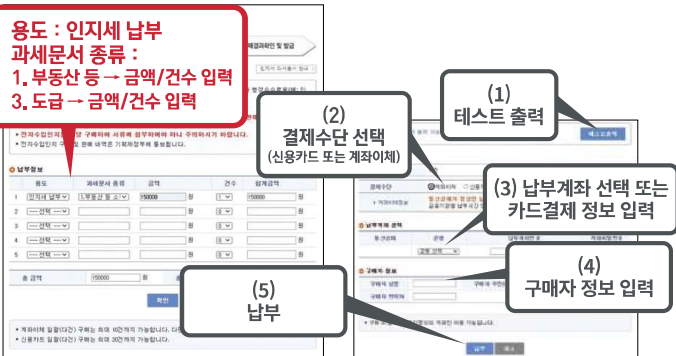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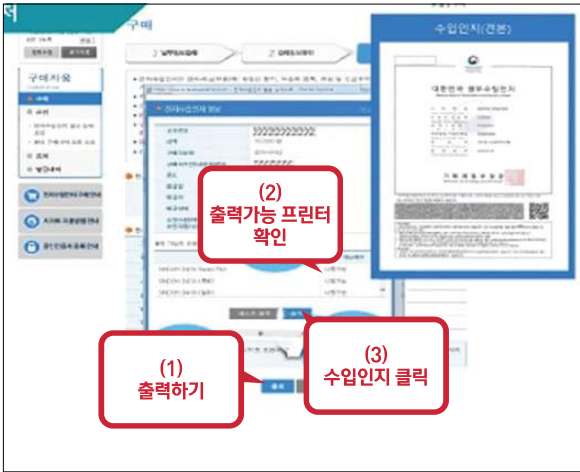
※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간 연대하여 균등 납부(각 50%)

■ 전자수입인지 구입처

구분	온라인	오프라인
구입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
구입방법	(1) 해당 홈페이지 접속 :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창 “전자수입인지” 검색 (2)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 (3)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서비스 클릭 후 구매선택 (4) 납부정보 입력 1. 용도 : 인지세 납부 2. 과세문서 종류 : 부동산 등 소유권이전 3. 금액 : 해당금액 입력 4. 건수 : 1건 (5)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선택하여 납부 후 출력	(1) 인근 우체국 또는 은행 방문 (2) 전자수입인지 구매신청서 작성 1. 용도 : 인지세 납부 2. 금액 : 계약서 기재금액에 따른 해당세액 입력 3. 매수 : 1매 4.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 기재 (3) 결제(현금납부만 가능) (4) 전자수입인지 발급
유의사항	▶ 전자수입인지는 종이문서용으로 구입하여야 하며,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않고 계약 당사자간에 인지세를 현금으로 인계할 경우 납세 의무 미이행으로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 계약체결시 인지세가 납부됨에 따라 등기시 별도로 인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지세 납부 안내(2)

전자수입인지 구입 방법

① www.e-revenuestamp.or.kr 접속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② 로그인_비회원 구매 가능  (2) 로그인 후 구매 클릭 (1) 로그인 또는 비회원서비스 ○ 수입인지는 회원가입 로그인, 비회원 서비스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비회원의 경우에도 구매한 수입인지 조화가 가능
③ 수입인지 구매하기_납부정보 입력  · 용도 : 인지세 납부 · 과세문서 종류 : 1. 부동산 등 → 금액/건수 입력 3. 도급 → 금액/건수 입력 (1) 테스트 출력 (2) 결제수단 선택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3) 납부계좌 선택 또는 카드결제 정보 입력 (4) 구매자 정보 입력 (5) 납부 ○ 최종 결제 전 프린트 출력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계좌이체를 통해 수입인지를 납부하기 위한 화면입니다.	④ 출력  (2) 출력가능 프린터 확인 (1) 출력하기 (3) 수입인지 클릭 ○ 전자수입인지는 출력물이 원본이므로 1회만 출력가능하며, 재출력은 절대 불가하므로, 사전에 테스트 출력을 통하여 인쇄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력 버튼 클릭 시 새창으로 전자수입인지정보와 출력가능한 프린터 목록을 제공합니다. 출력가능한 프린트를 확인하신 후 “출력” 버튼을 클릭하시면 수입인지 출력이 가능합니다.